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7. 9. 1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7. 10. 24.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 10. 27)
제6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 10. 2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치승 재무담당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세출 총괄

①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 세입예산액 80,317,228,000원 - 수납액 91,744,899,318원

· 세출예산현액 90,361,188,820원(전년도 이월사업비 10,043,960,820원
을 포함)

- 지출액은 68,998,832,633원.

· 그 차인 잔액 22,746,066,685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

②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16,800,494,167원)

· 명시이월 8,559,788,000원, 사고이월 2,322,687,980원, 계속비이월
4,639,730,040원 보조금(국·시비) 집행잔액 1,278,288,147원

③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45,572,518원

○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이체등 증감액(B)	예산현액 (A+B)	징수결정 액(C)	수납액 (D)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D/C)	
						계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총 계	80,317	10,044	90,361	101,267	91,745	9,522	82	9,440	90. ⁶	
소 계	71,022	9,062	80,084	87,603	81,054	6,549	82	6,467	92. ⁵	
일 반	지 방 세	19,361	-	19,361	22,460	20,083	2,377	66	2,311	89. ⁴
	보 통 세	16,401	-	16,401	17,770	16,894	876	5	871	95. ¹
	목 적 세	2,769	-	2,769	3,001	2,949	52	-	52	98. ³
	과년도수입	191	-	191	1,689	240	1,449	61	1,388	14. ²
회 계	세 외 수 입	21,076	9,062	30,137	34,545	30,373	4,172	15	4 157	87. ⁹
	경상적세외수입	9,054	-	9,054	9,127	9,127	-	-	-	100
	임시적세외수입	12,022	9,062	21,083	25,418	21,246	4,172	15	4,157	83. ⁶
	조 정 교 부 금	16,943	-	16,943	16,943	16,943	-	-	-	100
	보 조 금	13,644	-	13,644	13,655	13,655	-	-	-	100
	국 고 보 조 금	5,533		5,533	5,593	5,593	-	-	-	100
	시 비 보 고 금	8,111		8,111	8,062	8,062				100
소 계	9,295	982	10,277	13,664	10,691	2,973		2,973	78. ²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3,193	-	3,193	3,279	3,200	79		79	97. ⁶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48		548	606	528	78		78	87. ¹
	주차장	4,429		4,429	7,618	4,802	2,816		2,816	53. ⁶
	주거환경개선사업	555	718	1,273	1,327	1,327	-	-	-	100
	장림유수지이설 사업	520	264	784	784	784	-	-	-	1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0		50	50	50	-	-	-	100

○ 세출결산

구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D)	익년도 이월액 (E)	불용액 (C-D-E)	
합계	80,317	10,044	90,361	71,321	68,998	15,522	5,841	
소계	71,022	9,062	80,084	65,908	64,081	10,812	25,191	
일반 회 계	구본청소관	63,541	9,062	72,603	58,540	56,713	10,812	5,078
	일반행정	15,527	2,020	17,547	15,243	15,243	71	2,233
	사회개발	26,997	2,266	29,263	24,119	24,044	4,516	703
	경제개발	18,859	5,112	23,971	18,136	16,384	6,225	1,362
	민방위	286		286	262	262		24
	지원및기타경비	1,872	△336	1,536	780	780		756
	동소관	7,481		7,481	7,368	7,368		113
	일반행정	7,121		7,121	7,028	7,028		93
	사회개발	360		360	340	340		20
	소계	9,295	982	10,277	5,413	4,917	4,710	650
특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3,193	-	3,193	3,192	3,192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48	-	5,48	248	248		300
	주차장	4,429	-	4,429	337	337	3,757	335
	주거환경개선사업	555	718	1,273	1,009	513	754	6
	장림유수지이설사업	520	264	784	584	584	199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0		50	43	43		7

□ 예산성립후 증감액 내용

○ 일반회계 -----71건 9,061,618천원

- 전년도 이월
 - ┌ 명 시 이 월 : 11건 4,178,101천원
 - ├ 사 고 이 월 : 29건 2,766,955천원
 - └ 계 속 비 이 월 : 1건 2,116,562천원
- 예비비 지출 : 1건±375,601천원
- 예 산 전 용 : 28건±863,709천원

○ 특별회계 ----- 3건 982,343천원

- 명 시 이 월(주거 환경 개선사업) : 2건 718,301천원
- 계 속 비 이월(장림유수지이설사업) : 1건 264,042천원

□ 익년도 이월액 내용

○ 일반회계 ----- 23건 10,811,693천원

- 명 시 이 월 : 9건 4,544,276천원
- 사 고 이 월 : 13건 1,826,900천원
- 계 속 비 이월 : 1건 4,440,517천원

○ 특별회계 ----- 4건 4,710,513천원

- 명 시 이 월 : 2건 4,015,512천원
 - ┌ 주차장 1건 3,757,110천원
 - └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258,402천원
- 사 고 이 월(주거환경개선사업) 1건 495, 788천원
- 계 속 비 이월(장림유수지이설사업)1건 199,213천원

□ 채무부담행위(일반회계)

○ 서부산 문화회관건립 : 승인액1,750,000천원 행위액 1,750,000

- 구평동~장림동간 도로개설 : 승인액 500,000천원 행위액 50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세입분야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6년도 세입예산액에 이월사업비 등을 가산한 예산현액이 90,361백만원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101,26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0.6%인 91,745백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9,522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95년도 보다 1,956백만원의 미수납금이 증가
-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의 지방세는 89.4%, 세외수입 87.9%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100%를 징수하여 일반회계전체적으로는 92.5%가 징수되고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78.2%를 징수하여 95년도 일반회계 징수율 93.6%, 특별회계징수율 85.3%에 비교하여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
-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부분이 2,377백만원(95년도 1,80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172백만원(95년도 3,744백만원)등 6,549백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18.1%라 증가되고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8백만원(95년도 27백만원), 주차장 2,816백만원(95년도 1,929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95년도에 대비하여 전체가 25.8%증가되어 있으므로 체납액 정리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이 과년도 수입부분의 96년도 징수결정액이 95년도 결산결과 미수납처리 다음연도 이월액과 일치 해야함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되나 각각 모두 상이하여 이에 대한 사유규명이 수반됨.

나. 세출분야

- 96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등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90,361백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등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이 5,84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에 3,007백만원, 사회개발에 722백만원, 경제개발에 1,362백만원, 민방위비에 24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75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300백만원 주차장에서 334백만원 등이 발생 되었습.

이러한 결과는 95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9,644백만원에 비하여 많이 감소되어 예산운영의 발전된 모습 보여짐.

○ 그러나다음과 같은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고 있음.

첫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27건에 29백여만원과 예산의 1/2미만을 집행한 사업등이 20건에 불용액이 44백만원이 되며, 예산액의 80% 미만을 집행한 사업중 불용액이 1건당 백만원 이상인 것이 약33건에 260백만원이나 되는 것은 예산을 사전 계획에 의하여 편성치 않고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 판단됨.

둘째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28건 864백여만원이나 되는 것은 정확한 사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행정을 수행한 결과 등이라고 볼수 있고, 전용한 내용중에서도 민원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관리 보상금, 자치단체부담금등 수건의 사업이 전용이후 예산과목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시킨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을 전용사용함에 있어 꼭 필요한 금액만 전용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겠음.

셋째 계속비 집행상황 작성을 96예산서의 계속비조서와 연도 예산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일치하지 않으며

넷째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에 의하여 연도별 상환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현재 작성되어 있는 내용중 채무부담행위액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여 계약 등을 체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함에도 채무부담승인액 그대로 작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망됨.

다. 종합의견

-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서별 결산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의회의 해당 상임위에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요망됨
 -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결산서상 잘못된 사항을 보완한 후 결산서를 유인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겠으며
 - 향후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결산상의 바람직한 사항과 잘못된사항을 충분히 검토보완하고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운영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더욱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
- 기타사항은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4. 질의요지

가.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97. 10. 27)

○ 구태회위원

- 95년도 결산서상 세외수입이월금 3,739,165,787원과 96년도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3,677,601,707원과의 차액분에 대한 감액사유 규명
- 미수납액이 전년 결산서 대비 증가된 사유 규명
-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사업비에 대한 계약관계와 계속비 금액과 채무부담 행위액에 대한 구체적 사안 규명
- 정수물품관리 내역에 관한 사항

○ 손판암위원

- 내년 결산승인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해 부서별 결산서를 편제하여 제출토록 개선 요구
- 95년도(289,275,000원)와 96년도(863,709,000원)를 비교하여 전용남발과 증액사유에 대한 사유 규명

- 주차장 특별회계 과오납 반환액(6,345,450원)에 대한 사유 규명

○ 장용희 위원

- 95년도와 96년도 결산서를 대비해 볼 때 미수납액이 약 20억원이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은 약 2,000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대책 규명
- 95년도와(227,919,259원) 96년도(340,923,116원) 결산서 대비 과오납금액이 1억1,300만원이 증가한 사유 규명
- 채무결산서에 있어 일반채무와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를 구분 작성하여 순수채무와 보증채무를 관리토록 개선 요구
-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에 96년도 매각분(182억)과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액(60,939,900원)과의 불일치 한 사유 규명

○ 이화오위원

- 결손처분에 있어 무재산, 시효완성등을 소홀하게 적용시킨데 대하여 사유규명
- 결산검사 실시결과 감사의견 미반영에 대한 사항과 결산서 수치 부정확에 대한 사유규명(정오표 심사당일 제출)
-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매각수입(60,939,900원) 내역

○ 최병선위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미수납액(78,091,180원)에 대한 사유 규명

○ 김신우위원

- 서부산문화회관 채무부담 행위 승인액(17억 5,000만원)에 대한 미상환 사유규명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79,006,822)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 김상수위원

- 과년도 이월액중 당해연도 징수대책이 소홀한데 대하여 규명
-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 이월금 내역 규명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불용액(299,795,000원)에 대한 관리방안 규명
- 채무부담행위액중 채무부담행위 승인액과 행위액에 대한 결산서 작성 오류부분에 대한 사유 규명
- 예산의 전용부분에 있어 전용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원인별 사유 규명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사업비외수입 예산액(13,354,000원)과 징수결정액(93,291,104원)그리고 실제 수납액(14,284,282)을 대비해 볼 때 미수납액(79,006,822원)에 대한 사유 규명
- 동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83,215,811원)과 95년도 이월금(64,327,696원)이 불일치 하는데에 대한 사유 규명
- 결산서상 채권 현재액 조서에 이자 발생 누락에 대한 사유 규명
-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

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7. 10. 28)

○ 구태회 위원

- 예산의 전용부분에 있어 95년도(22건:289,275천원)와 96년도(28건 : 863,709천원)를 비교해 보면 큰 금액이 증가 된 것은 전용이 무원칙적으로 남발된 것으로 보여짐. 일례로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전용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한 당초 상여수당지급 규정을 무시한 결과로 이에 따른 구체적 사유 규명

-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중 시효 완성분(18,608천원)과 무재산(63,128천원)자에 대한 처분 사안 규명

○ 김신우 위원

- 환경미화원 퇴직금(72,000천원)과 일용인부 퇴직금(24,000천원) 전용사항은 당초 본 예산과 1회 추경예산편성시 문전수거로 인한 퇴직인원 증가가 예상 되었음에도 관심소홀로 실기하자 임의로 전용결정한 사유 규명

○ 이화오 위원

- 기타직 퇴직금과 일용인부 퇴직금은 많은 금액을 전용결정한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데 대한 사유 규명

○ 최병선 위원

- 사고이월사업비중 재활용품 처리장비 구입(37,000천원)과 관련 납품지연에 따른 사유 규명

○ 김상수 위원

- 정확한 예측에 의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반적으로 전용 결정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예산편성 단계부터 무계획적으로 편성된 사유 규명

○ 손판암 위원

- 기금결산에 있어 기금운영계획서에 의거 예탁금융기관의 이자수입 관리 내역 규명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